■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[별지 제27호서식] <개정 2022. 11. 29.>

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사용개시신고서

※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.

(앞쪽)

접수번호	접수일	처리기간 7일

신고인	① 상호(명칭)	② 사업자등록번호
	③ 성명(대표자)	④ 생년월일
	⑤ 주소(사무실) (전화번호:)	

⑥ 처리시설 소재지	(전화번호:)		
⑦ 업종		⑧ 승인·허가(관리) 번호	제 호

사용개시대상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

⑨ 시설명	⑩ 시설규격 (능력)	⑪ 처분 또는 재활용 예상량(톤/년)	⑫ 방지시설명 및 용량	⑬ 사용개시 예정일

「폐기물관리법」 제2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사용개시신고를 합니다.

년 월 일

신고인 (서명 또는 인)

시·도지사, 유역(지방)환경청장 귀하

첨부서류	1. 해당 시설의 유지관리계획서 2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(「폐기물관리법」 제29조제2항제1호에 따른 시설은 제외합니다)의 경우에는 「폐기물관리법」 제30조의2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에서 발급한 그 시설의 검사결과서(「대기환경보전법」 제2조제12호에 따른 대기오염방지시설만을 증설하거나 교체하였을 때에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) 가. 소각시설 나. 멸균분쇄시설(「폐기물관리법 시행령」 별표 3 제1호나목9)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의료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시설을 포함합니다) 다. 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리하는 시설로서 1일 처리능력 100㎏ 이상인 시설 라. 시멘트 소성로(폐기물을 연료로 사용하는 경우로 한정합니다) 마. 소각열회수시설 바. 열분해시설(가스화시설을 포함합니다)	수수료 없음

210㎜×297㎜[백상지 80g/㎡(재활용품)]

작성방법

1. ①란은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 승인·신고 및 허가 업소명을 적되, 수인이 공동으로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대표업체명을 적습니다.
2. ⑦란은 폐기물처리업의 경우에는 허가받은 폐기물처리업의 종류를 적고, 그 외의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경우에는 시설 소유자의 주된 업종을 적습니다.
3. ⑧란은 폐기물처리업의 경우에는 허가번호를, 그 외의 경우에는 승인·관리번호를 적습니다.
4. ⑩란은 시간당 처분 또는 재활용 능력 및 1일 평균 가동시간을 적습니다.

처리절차

신고서 작성	➜	접수	➜	검토	➜	실태조사	➜	결재	➜	신고수리
신고인				시·도지사, 유역(지방)환경청장						